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12. 17 선고 2019가단11874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1. 주식회사 B

변론 종결 2019. 12. 6

판결 선고 2019. 12. 17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,974,385원 및 그 중 43,758,590원에 대하여 2019.1. 24. 부터 2019. 12. 4. 까지는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지연손해금 중이 사건소장부분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구하는 것 외에 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근거

가. 피고 주식회사 B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나. 피고 C 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1항, 제1항)

3. 일부기각 부분
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(이하, '소촉법'이라고 한다)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(2019. 5. 21. 대통령령 제 2967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. 6. 1. 시행된 것) 및 동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,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소촉법에 따른 위 지연이자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.

판사 박예지

별지